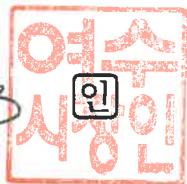


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장애인학대  
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2 월 29 일

여 수 시 장 2023.12.29



여수시 조례 제2024호

붙임 여수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 
조례 1부

# 여수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,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“장애인학대”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- “장애인학대관련범죄”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4항에 따른 죄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)** 시장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-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
- 피해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 · 상담 등 지원 · 연계
- 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
-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**제5조(교육·홍보)** ① 시장은 소속 직원,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·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에 노력해야 한다.

**제6조(재정지원)**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·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내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, 상담,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, 수사기관,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비밀준수 의무)**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, 종사하는 사람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